

제6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포럼 개최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cf.or.kr)는 9월 16일(목)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을 초청하여 포스코, 현대해상, KTF 등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과 표시·광고법 및 전자거래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순식 국장은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수, 기업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8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에는 소비자 정보제공의 확대와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법 개정에 대해서는 명칭을 「표시·광고의 공정화 및 소비자 정보추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중요정보 고시사항, 소비자 정보제공센터 설립 및 지정, 경미한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 확대, 교육명령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자거래 보호법에는 에스스로제도와 노스팸제도의 신설 및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참석기업

대림I&S, 메가마트, 삼성화재,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쌍용화재, 오비맥주, 오토에버 시스템즈, 유신커뮤니케이션, 앤알커뮤니케이션, 에프엘피코리아, 전국은행연합회, 창원특수강, 포스코, 태평양, 한국농수산방송, 한국사미트NT, 한국암웨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해상, 현대홈쇼핑, 한화유통, CJ홈쇼핑, KTF, KT&G, LG전자, LG칼텍스정유, LG홈쇼핑(이상 가나다 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9월 23일(목)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119개 하도급 관련 업체의 임직원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 범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신고사건 처리 사례 등을 중심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1과 조용광 과장은 하도급법의 목적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발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특별교육은 신청기업이 많아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교육이수 기업의 임원에게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1점의 감점혜택이 부여된다.

『특수거래분야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방문판매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관련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목)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특수거래분야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교육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홍대원 서기관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제·개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구 법상 무조건적 청약철회 기간은 방문판매 10일, 다단계판매 20일이

었으나 법 개정으로 방문·다단계판매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은 14일로 통일되고, 통신판매는 7일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거래를 일반판매와 구별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매·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는 등 일반판매와 달리 특수판매는 상대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 일반판매와 구별하여 규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분야 공정거래 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1일(월)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전자상거래분야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전자상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의 표준약관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김석호 과장은 전자상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마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표준약관제도에 대하여 사업자가 표준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하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함으로써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7대 핵심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고 CP의 실질적 작동여부, 감경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다.

▶▶▶질의/응답

질의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확인하기 위한다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제품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응답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물건의 파손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물건의 확인도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귀책사유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질의 에스크로업체의 선택을 소비자, 에스크로업체, 사업자 등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스크로 외에 다른 제도가 있는지 여부

응답 에스크로제도는 사업자와 에스크로업체와의 관계이다. 에스크로업체의 선택은 통신판매사업자가 결정한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에스크로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는 보험을 선택해도 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9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9월 17일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불개시(반려)

▶ 백두대간종합건설(주) 등 3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이고, 피신고인의 연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미만인 중소기업자로 하도급법 적용제의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불개시하고 신고서를 반려함.

▣ 조정종료(취하)

▶ (주)신아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 후 신고인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성립(합의)

▶ (주)대한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조정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불성립

▶ 성진지오텍(주) 등 1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양 당사자의 의견 상이,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불수락, 법원에 소송계류중, 자금력 부족, 신고인의 정산 합의사실 부인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함.

▣ 사건처리현황(2004. 1. 1~9. 30)

구분	계	조정불성립	조정성립(합의)	신고취하	불개시
제조	35	10	3	18	4
건설	50	18	6	22	4
계	85	28	9	40	8